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30호 2013. 1. 28.(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97호(201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1

회							
람							

201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계획인원

- 명예퇴직 : ○명
- 조기퇴직 : ○명

2. 명예(조기)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 :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 조기퇴직 : 실제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나. 신청기간 : 홀수 달(1, 3, 5, 7, 9, 11월) 1일 ~ 15일까지
(※ 부득이한 경우 수시 신청 가능)

다. 신청절차

- 명예조기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 기간내에 별첨 「명예·조기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명예·조기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3. 대상자 선정 및 추천

가. 소속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기간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

나.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조기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함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추천된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를 격월 단위로 최종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5.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의 취소

명예·조기퇴직 신청기간 이후 명예(조기)퇴직일 까지의 기간 중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3의 나)

6. 수당지급

명예·조기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예산 부족시에는 예산 확보 후)

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 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②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③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

8. 수당 산정방법

○ 명예퇴직

정년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 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월봉급액의 반액 × $\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right]$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

※ 호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text{월 봉급액} = (\text{연봉액} - \text{성과연봉}) / 12 \times 78\% \times 68.54\%$$

○ 조기퇴직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 지급

(단,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9. 기타사항

가.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조기퇴직의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한 대상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위 규정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총무과 인사팀(749-7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제출서식

- ① (수시)명예(조기) 퇴직원 1부.
- ②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 1부.
- ③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 ④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부.
- ⑤ 계좌입금통장 사본 1부.
- ⑥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 하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인 기 재 란	①소 속				☐ 일반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③공무원 구분	☐ 특정직() ☐ 기능직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⑤성명		한 자		⑦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근속기간	년 월	⑩정년일								
⑪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소 속 기 관 기 재 란	⑫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정 년		(세, 년)							
	⑭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 형량 :)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
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7.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 요건심사서

인적사항	소속 : _____		직위 : _____	
	직급 : _____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해당(이상)유무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 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인지 여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 여부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인지 여부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 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 제외) 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 복무 중에 있는 자 인지 여부(장기 위탁교육훈련 진 행 중인 자 포함)			
	명예퇴직원 자필작성 여부			
	그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			
조사 작성 및 확인자 201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 총무과 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 대 상 자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2. 퇴직사유 :

3.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201 . .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4.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퇴 직 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1 . .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이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 . .

○ 서 약 자 : (인)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급 :

성명 : (인)